

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사: 김홍균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7-20, 우영빌딩 4층

전 화 : (02) 556-7104 Fax : (02) 552-7146 E-mail : hongqyy62@chol.com



<CEO Message>

지금 우리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개인 (발명가)이나 집단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 기관,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은 과거의 실적이나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인 조직이나 개체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제는 각종 지적재산과의 관련이나 이들의 보호 없이는 무한경쟁에서 존립할 수도, 성장을 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개발이 완성된 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날 특허, 의장, 상표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로서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로써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추어 모든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적재산관련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 고객인 개인이나 기업이 무한 경쟁 속을 뚫고 우뚝 설 수 있도록 보좌하고 협조하고 또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소는 각 구성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양질의 특허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홍균 (공학박사)

<연구소 소개>

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분자분야에 대한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분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고분자 분야 연구 및 특허청 심사경험을 갖춘 변리사와 특허전문요원들의 뛰어난 인적 구성과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바탕으로 고분자분야 특허 출원의 권리화에 있어서 한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업무에서부터 첨단정보검색, 기술가치평가,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국립연구소, 대학, 대기업, 생명공학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을 대리하여 한국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및 PCT 출원을 담당하며, 또한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특허청에의 출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출원인들의 일반국내 출원 및 PCT를 경유한 PCT 출원들의 국내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망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빈틈없는 산업재산권 업무처리를 통하여 출원인들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활기있는 일터를 꾸려나가고 있는 저희 특허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앞서가는 고객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나갈 것이며,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업무소개>

1. 각종의 지식재산권 및 일반법률에 대한 상담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에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출원등록절차, 관련법령사항 및 일반법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2. 국내 및 해외 출원업무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국내 및 국제출원업무
 - － 개발한 제품 및 아이디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특허청 및 각국의 변리사들과 제휴하여 모든 외국특허청에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을 출원하고, 권리취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3. 이의신청 및 답변

- 권리가 설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답변업무
 - － 제3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특허청에 대한 이의의 신청 또는 자기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답변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4. 심판 및 소송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각종심판 및 특허소송을 포함하여 각종의 민·형사소송업무
 - － 설정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취소심판, 침해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업무 및 특허청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의 심결취소소송,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련된 침해소송 및 각 법원에의 일반적인 소송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5. 기술이전

- 산업재산권의 양도, 양수 및 실시권 (사용권)의 계약업무
 - － 양 당사자간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양수계약, 실시권 (사용권)의 설정계약 등의 계약서 작성 및 특허청 절차 등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6.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 특정기술분야의 기술조사 및 선행등록상표의 조사업무
 - － 산업재산권의 출원전 관련기술분야의 선행기술 또는 선행등록상표의 유무에 대한 검색 및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공개기술을 조사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